

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 중 “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”를 “제3항의 기준에 적합”으로
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계환기설비 중 공기가 통하는 관은 내부의
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습식 또는 건식 세척 등으로 관리할 수
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환기시설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<u>유지관리</u>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제3항의 기준에 적합----- -----.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계환기설비 중 공기가 통하는 관은 내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습식 또는 건식 세척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.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

제11조(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)

(생략)

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7. 10., 2009. 12. 31.>

(이하생략)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(생략)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(이하생략)